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권은숙	단체명	경기도보건교사회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64-16		
	전화번호	031-972-9450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제12조(교권보호국) 교권보호국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조제2호를 삭제하고, 해당 사무를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의 분장사무로 각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 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 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 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권보호국에 편성할 경우 시급한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대응에 비해 중장기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정책의 우선순위 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교권보호국과는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력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해당 사무의 교권 보호국 편성에 반대 하며 이관 요청
	제7조(남부교육국) 남부교육국장은 제1 부교육감 관장 지역 의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수학습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규 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3호 앞에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호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는 교육과정 및 학생의 성장·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남부교 육국에 해당 사무를 명시하면 관장 지역의 교육과 정 지원과 건강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학교와 교육 지원청의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 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취지가 지역별 교육지원 체 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요청 － 분장사무 추가
	제10조(북부교육국) 북부교육국장은 제2 부교육감 관장 지역 의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수학습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규 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3호 앞에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호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역시 교육과 정 지원, 보건교사 장학·연수 및 학교 현장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북부교육국 이 각 관장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되, 경기도 전체 의 기본계획과 공통 기준은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 기적인 협의·평가체계를 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별 대응력을 함께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요청 － 분장사무 추가
	제7조(남부교육국)	각 조의 제13호 앞에 ‘관장 지역 학생건강증진센터		수정 요청

남부교육국장은 제1 부교육감 관장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u>1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 제10조(북부교육국) 북부교육국장은 제2 부교육감 관장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u>1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	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호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은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약 합의서」 제23조는 '경기 남부권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권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현행 센터를 중심으로 북부교육국과 연계하고, 남부는 신설 센터를 중심으로 남부교육국과 연계하도록 소관과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센터의 인력·예산·사업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권역별 지원 공백과 업무 중복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센터 운영·지원 사무 추가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 따른 교육규칙 정비 시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에 학생건강팀을 각각 편성하고, 전문인력과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두고 보건교육전문직인 장학관·장학사와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총 합의서 제4조제2항도 보건교육전문직원의 확대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 교육국의 학생건강팀에 필요한 전문직과 직원을 배치하고, 정책기획·예산·장학·평가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팀과 센터의 역할, 센터의 소속·관할 및 남부·북부 간 협력체계도 관련 교육규칙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요청 － 후속 교육규칙 및 운영체계 정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시행에 따른 업무 이관과 남부권 학생건강증진센터 신설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총 합의서 제23조의 남부권 센터 별도 설치·운영 합의와 제25조제1항·제2항의 합의 이행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 일정, 시설·정원·예산 확보계획 및 추진 책임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조직·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사항의 추진 경과와 관련 업무가 충실히 연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개소 전까지 남부지역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 공백을 예방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요청 － 시행일 변경이 아닌 시행 준비 및 합의 이행계획 마련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제출자: 성명 권은숙 (인)

경기도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 귀하